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94호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장진호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호	제94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6. 08.

대표발의자 : 장진호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조배식,
서승필, 이태모,
윤금숙

1. 제안이유

「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지급기준 변경(안 제3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

나. 기타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3. 6. 8. ~ 6. 12.(5일간)

□ 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규칙 제 호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「논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「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장진호 의원 외 5명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인사위원회 심의수당)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<u>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</u>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2(인사위원회 심의수당)----- ----- ----- <u>「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</u>----- -----.</p>

「지방자치법」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